

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
의안 번호	463
----------	-----

제의연월일 : 2024. 11. 21.

제 의 자 : 의 장

1. 제의이유

「김해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50조에 따라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회의록 서명의원 : 박은희 의원, 허운옥 의원

관 련 법 령

□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

제50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 회의록에는 의장,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, 임시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. 다만,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.

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.